

신청인 제출서류	1.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(예: 양도증·공유계약서) 2.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·인가·동의·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.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(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) 4.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품종보호권 이전: 5만3천원 (상속의 경우에는 1만4천원) 실시권 이전: 3만3천원(상속 의 경우에는 1만1천원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초본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